

대구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가단136062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용덕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0,26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는 2021. 2. 8. 피고에게 원사대금 99,000,264원 중 10,000,000원을 2021. 2. 말일1) 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에 30,000,000원씩 3회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뺀 나머지 89,000,264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금 최종 변제기(2022. 8. 31.)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는 원고가 형사합의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았다.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대보증인인 피고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으로 C가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명환

1) 각서에는 “2月 30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1. 2. 30.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21. 2. 말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